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합니다.

2026. 6. 30.

경기도지사

1. 허가구역 지정지역

대 상 지 역	면 적(k㎡)	비 고
합 계	170.50	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
용인 기흥구	81.64	
화성 동탄구	55.52	
구리시	33.34	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6년 7월 5일 ~ 2027년 12월 31일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㎡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㎡ 초과
	임 야	1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㎡ 초과

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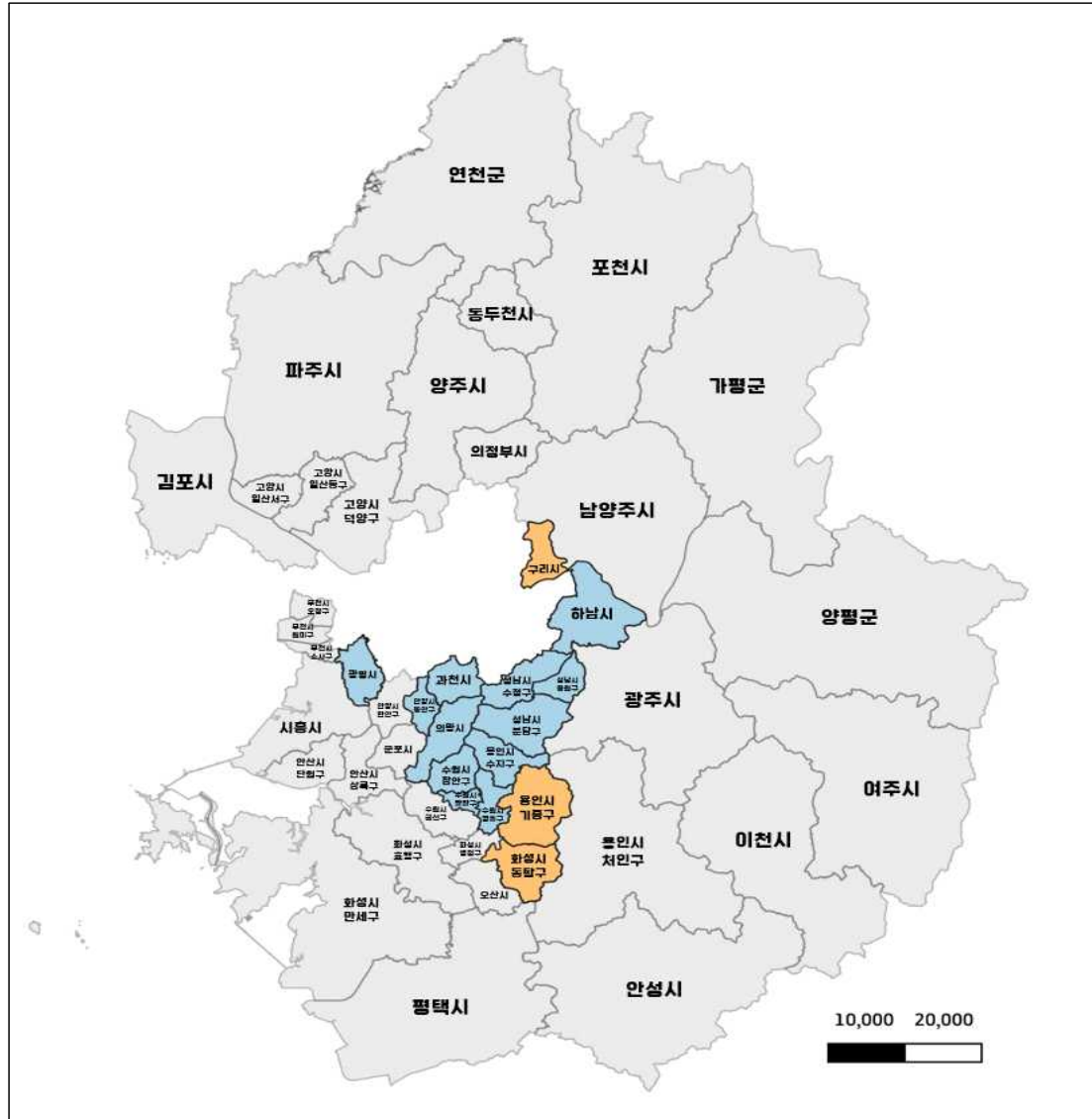
○ 허가대상 용도 : 아파트

※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‘아파트’

5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

※ 토지e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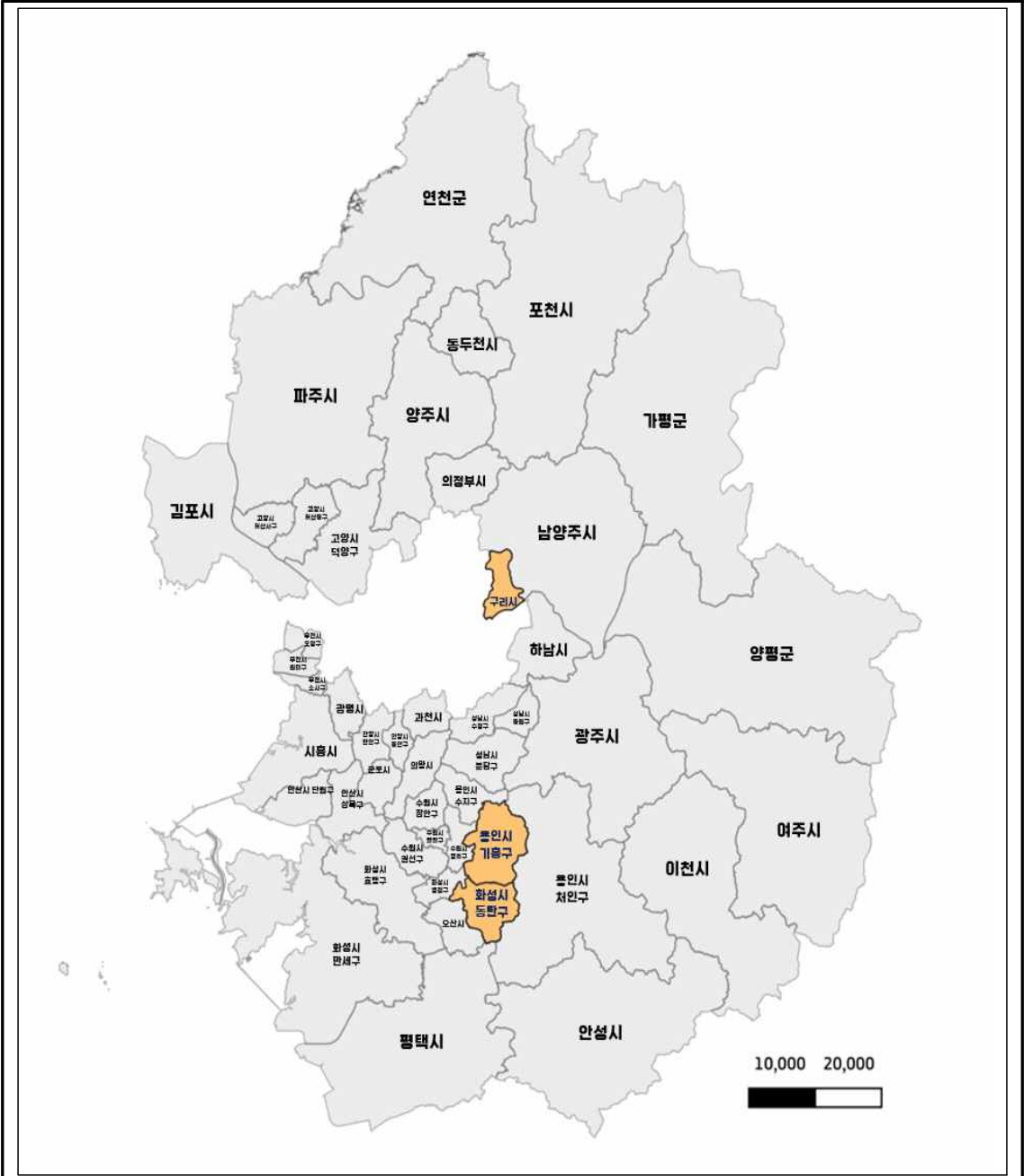
[붙임]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



경기도
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

범
례

- 기 지정 구역 (국토교통부 '주택안전화 대책')
 ※(지정기간) 2025.10.20. ~ 2026.12.31.
- 신규 지정 구역
 (용인기흥, 화성동탄, 구리)



경기도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	범 례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	 신규 지정 구역 (용인기흥, 화성동탄, 구리)